

임시 이사회 회의록

- 개최일시 : 2013년 1월 17일(목) 13:00-14:00
- 개최장소 : 이랜드빌딩 회의실
- 총이사수 : 6명
- 출석이사 : 4명(이경준 이사, 이태웅 이사, 윤형주 이사, 박영희 이사)

이경준 이사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<제 1호 의안> 이랜드복지재단 법인정관변경(안) 심의의 건

- ▶ 의장은 이사회에 법인정관변경(안)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.
- ▶ 정영일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인의 정관도 일부 변경이 필요함을 설명하다. 먼저 사회복지법 제1장제18조(임원)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2.1.26.>에 따라 2명의 이사가 추가로 선임되어야 하여 관련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고, 또한 동법 1장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 6항이 신설됨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이루어져야함을 설명하며 아래와 같이 기존 정관의 변경이 필요함을 설명하다.

- 아 래 -

○ 법인정관변경(안)

장	조	기존내용	변경내용
3	15	2. 이사 6인 이상(이사장 포함)	2. 이사 7인 이상(이사장 포함)
3	16	②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취임한다.	② 이사 정수의 1/3(소수점 이하는 버림)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,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③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취임한다.
4	28	없음	④ 의사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 및 시장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한다. (단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일부 내용은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한다.)

- ▶ 이태웅 이사가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 대해 묻다.
- ▶ 정영일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장제18조(임원)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

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다.

- 아 래 -

사회복지사업법 제1장제18조(임원)

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(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(제2호,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26>

1.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
2.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

▶ 박영희 이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여 주기를 구하며 위 건에 대하여 동의하다.

▶ 윤형주 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화에 따라 더 투명하고 공정한 법인의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의견을 표하며 제청하다

이경준 이사장이 본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.

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이랜드복지재단의 법인정관변경 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고,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다.

이경준이사장은 본 이사회 의 안건이 모두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,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고 폐회를 선언하다

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.
폐회시각은 14시 00분

2013년 1월 17일

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

이사장 이 경 준 (인)



이 사 이 태 웅 (인)



이 사 윤 형 주



이 사 박 영 희

